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보전하고, 불교문화를 전시·체험·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 나. 우리시의 명품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목적, 정의,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4조)
- 나.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15조)
- 다.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제23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4조 ~ 제3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이하 “초전지”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전통가옥체험관
 - 나. 불교문화체험관
 - 다. 스토리텔링관
 - 라. 전시가옥
 - 마. 그 밖의 부대편의시설
2. “이용자”란 초전지 시설을 이용·체험·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

가. 1월, 7월, 8월, 12월

나. 금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 전날

제3조(위치) 초전지는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2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초전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전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신라불교문화에 관한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3.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초전지 조성 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2장 초전지 이용

제5조(이용시간) 초전지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초전지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입장료 등) 초전지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이용료) ①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등의 예약) ①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초전지 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예약한 자가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전지 시설,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고의나 과실로 초전지 내 각종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망실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조치) 초전지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수입금 입금) 이용료 등으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 및 운영, 위탁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초전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시장은 초전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전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초전지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편의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특산·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8조(수탁자 선정) ① 초전지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초전지 위탁 관리·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전지 시설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구미시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초전지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설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초전지 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초전지 운영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초전지의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에 관한 관련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4장 위원회

제24조(설치) 시장은 초전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초전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초전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적격심사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초전지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미시의회의원과 역사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구미시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초전지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담당계장(주사)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또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이용시간 및 이용료

(제5조, 제8조 관련)

□ 이용시간

구분	이용시간	이용기준	비고
전통가옥 체험관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1동 1박	
불교문화 체험관	당일 15:00 ~ 다음 날 13:00	1명 1박	
스토리텔링관, 전시가옥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규모		이용기간	이용료		비고
				성수기	비수기	
전통가옥 체험관	체 험 관 1	안채1 (42㎡, 4~6명)	1동/1박	100,000	70,000	방2, 화장실, 온돌마루
		안채2 (57㎡, 4~8명)	1동/1박	120,000	84,000	방2, 화장실, 대청마루
	체 험 관 2	안채1 (42㎡, 4~6명)	1동/1박	100,000	70,000	방2, 화장실, 온돌마루
		안채2 (63㎡, 2~5명)	1동/1박	140,000	98,000	방1, 화장실, 대청마루, 부마루
	체 험 관 3	안채 (42㎡, 4~6명)	1동/1박	100,000	70,000	방2, 화장실, 온돌마루
	체 험 관 4	안채 및 별채 (92㎡, 8~10명)	2동/1박	200,000	140,000	방4, 화장실, 온돌마루, 대청마루
불교문화 체 험 관	133.65㎡		1명/1박	70,000	49,000	

[별표 2]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이용료 감면율(제9조 관련)

구분	감면율(%)	비고
1. 구미시민	20	전통가옥체험, 불교문화체험 이용에 한함
2.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50	
3. 장애인(1~3급)	50	
4. 국가보훈대상자	50	
5. 기타 감면 대상	5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이용료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타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별표 3]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이용료 반환기준
(제11조 관련)

구분	유형	반환기준
이용자 귀책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환급불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운영자 귀책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5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8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 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별지 서식]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위탁 관리·운영 신청서						
신청인*	단체(법인)명칭*					
	대표자 성명*		(한자 :)	전화번호*		
	주소* (사무소 소재지)					
주요사업추진실적						
자산현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
	※ 세부내역 : 불입					
수탁운영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년)					
<첨부서류> -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발급하므로 제출 불필요) - 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의 주요경력(이력서) 1부 - 임원명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위탁 관리·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필수(*) - 주소, 단체명,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위탁 관리·운영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신라불교문화초전지에 대해 위탁관리·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명) : (인)

구미시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7년 하반기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개장 예정에 따라 시설 관리 · 운영에 따른 세입 · 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운영비 및 이용료에 근거하여 세입 · 세출 등을 기초로 한다.

구분	규모		이용기간	이용료		비고
				성수기	비수기	
전통가옥 체험관	체험관 1	안채1 (42㎡, 4~6명)	1동/1박	100,000	70,000	방2, 화장실, 온돌마루
		안채2 (57㎡, 4~8명)	1동/1박	120,000	84,000	방2, 화장실, 대청마루
	체험관 2	안채1 (42㎡, 4~6명)	1동/1박	100,000	70,000	방2, 화장실, 온돌마루
		안채2 (63㎡, 2~5명)	1동/1박	140,000	98,000	방1, 화장실, 대청마루, 부마루
	체험관 3	안채 (42㎡, 4~6명)	1동/1박	100,000	70,000	방2, 화장실, 온돌마루
	체험관 4	안채 및 별채 (92㎡, 8~10명)	2동/1박	200,000	140,000	방4, 화장실, 온돌마루, 대청마루
불교문화 체험관	133.65㎡		1명/1박	70,000	49,000	

- 운영비는 시설공단 단가를 적용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을 매년 적용한다.
-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 2017년은 10월 개장을 가정하여 세입 · 세출 모두 3개월분만 반영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특산/기념품 판매	14,098	57,800	59,245	60,725	62,245	254,113
	○ 전통가옥체험 이용료	10,692	43,740	44,820	45,900	46,980	192,132
	○ 불교문화체험 이용료	7,260	29,760	30,480	31,200	31,980	130,680
	소계(a)	32,050	131,300	134,545	137,825	141,205	576,925
세출	○ 신라불교문화 초전지운영비	98,999	401,144	406,359	411,642	416,993	1,735,137
	소계(b)	98,999	401,144	406,359	411,642	416,993	1,735,137
□ 총 비용(a-b)		-66,949	-269,844	-271,814	-273,817	-275,788	-1,158,21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98,999	401,144	406,359	411,642	416,993	1,735,137
민 간							
기 타							
합 계		98,999	401,144	406,359	411,642	416,993	1,735,137

5. 부대의견 : 세입(전통가옥체험 이용료 등) 및 세출(운영비) 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관광담당관실 박근아
연락처	054-480-664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연간수입 추정(2017년~2021년)

(단위: 천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이용료	특산/기념품 판매	14,098	57,800	59,245	60,725	62,245	254,113
	전통가옥 체험관	10,692	43,740	44,820	45,900	46,980	192,132
	불교문화 체험	7,260	29,760	30,480	31,200	31,980	130,680
계		32,050	131,300	134,545	137,825	141,205	576,925

※ 이용료 단가 : 5년간 동일 금액으로 제공

※ 홍보 등의 효과로 매년 약 2.5% 이용객 증가 예상

2. 세출

-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연간운영비 산정

(단위: 원)

구 분		직 영	공단위탁	민간위탁	비 고
인 건 비 (A)		310,349,075	218,683,495	213,037,879	
경 비 (B)	보험료	36,874,744	19,424,078	18,930,534	
	복리후생비	14,279,150	21,470,150	13,168,900	
	전력비	58,244,552	58,244,552	58,244,552	
	가스수도비	4,404,000	4,404,000	4,404,000	
	수리수선비	7,291,858	7,291,858	7,291,858	
	소모품비	10,509,088	10,509,088	10,509,088	
	사무관리비	16,527,272	16,527,272	16,527,272	
	지급수수료	17,026,784	17,026,784	17,026,784	
소 계		165,157,448	154,897,782	146,102,988	
순 운영비 (C)		475,506,523	373,581,277	359,140,867	A+B
일반관리비 (D)		28,530,391	22,414,876	21,548,452	C의 6%
이 윤 (E)		-	-	38,068,931	C+D의 10%
운 영 비 합 계		504,036,914	395,996,153	418,758,250	C+D+E
부 가 가 치 세		19,368,784	-	41,875,825	
연 간 운 영 비		523,405,698	395,996,153	460,634,075	

소관 실 · 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입 안 자	과 장	박 종 수
	담 당	남 재 식
	담 당 자	박 근 아 (480-6642)